

■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(PET)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[별표 2]

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(제3조 관련)

공급국	공급자	덤핑방지관세율 (%)
중국	1. 천진완화(Tianjin Wanhua Co., Ltd.)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.84
	2. 캥훼이(Kanghui New Material Technology Co., Ltd.), 캥훼이무역(Kanghui International Trade(Jiangsu) Co., Ltd.)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2.20
	3. 푸웨이(Fuwei Films Shandong Co., Ltd.)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6.98
	4. 산토우(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., Ltd.)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6.98
	5. 이화도레이(Yihua Toray Polyester Film Co., Ltd.)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6.98
	6. 장수중다(Jiangsu Zhongda New Materials International Co., Ltd.)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6.98
	7. 저장우밍(Zhejiang Wuming Trading Co., Ltd.)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6.98
	8. 티에스에프(TSF Co., Ltd.)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6.98
	9. 상하이(Shanghai Hansen Global Supply Co., Ltd.)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6.98
	10. 그 밖의 공급자	36.98
인도	11. 가웨어(Garware Polyester Limited)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4.90
	12. 진달(Jindal Poly Films Limited)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4.90
	13. 그 밖의 공급자	34.90

비고: 제 10 호의 공급자가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공급자와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 23 조 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 10 호의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

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한다.